

□서울장신대학교 연구윤리 서약서□

(교원·산학연구팀 서식 2015.9.25./개정 2016.9.22)

아래 본인은 서울장신대학교 교수로서 연구윤리관련 諸법령 및 서울장신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각종 연구를 진행하겠으며, 특히 아래 사항 연구자의 윤리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諸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

서약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연구자의 윤리)

1. 서울장신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자는 연구 논문 등을 투고하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다음 제2항에 열거된 바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연구자는 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나 이중투고 금지 등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 되지 않음을 밝히는 동의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 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5.11.3. 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서울장신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6.9.1.)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귀하